

중국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M&A규정 공포

상무부 등 6개 부처, 이전 잠정규정 수정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10일 ‘외국투자자의 중국 境內기업 M&A에 관한 규정’을 6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포하였다. 동 규정은 2006년 9월8일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이전의 잠정규정을 수정, 개편한 것이다.

이 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규정 적용대상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 境內에 위치한 非外商투자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거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M&A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혹은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외국 투자가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그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제2조)

또 외국투자는 ‘外商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단독투자 경영을 금지한 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의 피M&A기업 지분 100% 매입을 금지하며, 상기 ‘지도목록’에서 중국측의 지배주주를 규정한 산업의 경우에는 M&A 이후에도 중국 지배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 외국 투자의 경영을 금지한 산업에 대해서는 M&A를 할 수 없다.(제4조)

이와함께 M&A시 대상기업의 국유자산 양도가 요구되거나,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境內 상장을 합병할 경우, ‘외국 투자의 상장사 전략투자 관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관리 기구에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제5, 6조)

그리고 M&A후 피인수합병 기업의 등록자본금 중 외국지분이 25% 이상인 경우,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제9조)

M&A시, 중국내 중점산업 혹은 국가 경제 안전

요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거나, 중국의 전통적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 상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무부는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지분 및 자산 양도 등을 명령할 수 있다.(제12조)

이어 M&A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상한선(제19조)은 △등록자본 210만U\$ 이하의 경우, 투자총액이 등록자본 10/7을 초과할 수 없으며, △등록자본 210~500만U\$는 등록자본의 2 배 초과가 불가하며, △500~1200만U\$는 2.5배를 초과할 수 없고 △1200만U\$이상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동 규정 제5장(반독점 심사)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투자는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M&A 당사자 한쪽의 당해년도 중국시장에서의 매출액이 15억元(약 1.89억 U\$) 이상인 경우, 1년이내 M&A한 관련기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M&A 당사자 한쪽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인 경우, M&A 결과 중국시장 점유율이 25%인 경우 등이다.(제51조)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M&A후 시장 점유율이 커지거나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境內기업, 관련 부처, 관련 협회는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당 외국 투자의 보고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제51조).

그리고,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당사자, 보고 청원자 등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며, 법에 의거 해당 M&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제52조)